



제1546호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 조 례

조 례	제1694호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2
조 례	제1695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조 례	제1696호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조 례	제1697호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조 례	제1698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9
조 례	제1699호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4
조 례	제1700호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40
조 례	제1701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49
조 례	제1702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조 례	제1703호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66
조 례	제1704호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73
조 례	제1705호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81
조 례	제1706호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90
조 례	제1707호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96
조 례	제1708호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00
조 례	제1709호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106

○ 규 칙

규 칙	제1036호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14
-----	--------	-------------------------------	-------	-----

회 람								
----------------	--	--	--	--	--	--	--	--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694호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상금”을 “신고보상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 공무원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 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구민(이하 “신고자”라 한다)은”을 “신고자는”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를 “신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의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인 및 피신고인”을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제5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밖의”를 “밖에”로,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신고자가”를 “신고자는”으로, “도용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를 “도용하여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신고자”를 “신고자”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며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 보상금”을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상금”을 각각 “신고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밖에”를 “밖에 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자에게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7호 중 “밖의”를 각각 “밖에”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보상금”을 “신고보상금”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결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조리 신고대상에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 될 수 있도록 개정(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를 공무원 및 일반국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제2조제4호, 제3조제2항)
-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 적용 하도록 개정(제4조)
- 공직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의 관리 규정 신설(제12조제3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695호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폐업 신고 다. 시정명령 등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바.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사. 의료지도원 임명 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자. 과징금 처분 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4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92조	보건 소장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같은 규칙 제9조	
	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등 나. 치과기공소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의3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수리 다.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라. 안경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 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보건 소장
	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76조	
	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다. 과징금 처분 라. 청문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 명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1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나.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과태료 부과·징수 마. 금연을 위한 조치 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사. 보건교육의 실시 등 아.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자.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차.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카.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제19조	보건 소장
	11. 감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나.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다.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마.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바. 감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 내성감시 사. 건강진단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차. 오염장소등의 소독조치 카. 감염병의 예방조치 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파.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하.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 거.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너.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더.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37조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다.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영업의 정지명령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및 재취업 나. 입원명령 다. 결핵환자등의 의료 라. 결핵 집단 발생시의 조치 마. 결핵검진 바.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결핵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9조	보건 소장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15.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6.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신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 라. 과태료 부과·징수	「모자보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7.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암관리법」 제5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8.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나. 비용의 지원	「치매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제18조	보건 소장
	19.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실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 제3조	
	20.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규칙 제11조	
	2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라. 과징금처분 마.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등 바. 청문 사.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차. 외래치료 명령 및 지원 등 카. 보고·검사 등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4조 및 제6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제56조 및 제57조 같은 법 제59조 및 제64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89조	
	22. 의료인 단체 설치신고	「의료법」 제28조	
	23.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24. 산후조리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보건 소장
	25.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26.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검진 실시 나. 급여비용의 예탁	「의료급여법」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27.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신고 다. 보고 및 출입·검사 등 라.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마.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바. 과징금 처분 사. 위반사실의 공표 아. 청문 자.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차.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카.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같은 법 제3조의2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같은 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1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5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다.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파. 위임 및 위탁 하. 수수료 거. 과태료 부과징수 너. 위생교육 행정지원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보건 소장
	28.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나. 면허증의 재교부 등 다. 면허취소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29. 위생용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 등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다.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바. 출입·검사·수거 등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사. 시정명령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보건 소장
	아.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자.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차. 품목 등 제조정지	같은 법 제18조,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카.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타. 청문	같은 법 제21조	
	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하. 위반사실의 공표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거. 위생용품위생감시원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너.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같은 법 제27조	
	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같은 법 제29조	
	러. 과태료	같은 법 제34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30.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보건 소장
	나. 식품 등의 재검사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다.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등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 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마. 영업허가 및 신고 등 (조건부 영업허가 포함)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바. 영업 승계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사. 식품위생교육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품질관리 및 보고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제59조	
	자. 위해식품 등의 회수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차.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카. 위생등급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파. 시정명령·시설 개수명령·허가취소 등	같은 법 제71조·제74조·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부터 제91조 까지	보건 소장
	하.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거. 위해식품 등의 공표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너. 품목 제조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	
	더.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같은 법 제77조	
	러.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같은 법 제78조	
	머.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79조	
	버. 청문	같은 법 제81조	
	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어.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저. 위반사실 공표 등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처.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커. 식품진흥기금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터. 포상금 지급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퍼. 수수료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7조	
	허. 과태료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31.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면허 및 면허증 교부 등 나. 결격사유 다. 면허취소 라. 면허증의 재발급 마. 면허증의 반납	「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보건 소장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등 나. 영업의 승계 다. 출입·검사수거 등 라. 시정명령 마. 폐기처분 등 바. 시설의 개수명령 등 사. 영업허가 취소 등 아. 폐쇄조치 등 자.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포상금 지급 타. 권한의 위임·위탁 파. 과태료 부과징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3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정명령 나. 위해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다. 영업정지 등 라. 품목 등의 제조정지 마.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바.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사. 위반사실의 공표 아. 청문 자. 과태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 같은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법 제23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보건 소장
	3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다.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라.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 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제13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바. 시정명령 등 사. 청문 아. 과태료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보건 소장
	35. 특별사법 경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출석요구 나. 사건 송치 및 의견서 작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제21호, 같은 법 제6조 제6호·제18호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65조	
	3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 나. 검사결과 통보 수리 및 등록대장 관리 다. 시정 명령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의료법」 제63조	
	37.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 라. 폐기 명령 등 마. 등록 취소, 청문 바.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3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라.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 응급 의료시설 설치·운영 마.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바. 구급차등의 사용금지 사.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아. 의료기관 및 구급차운용자의 업무정지등 처분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보건 소장
구청장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구청장 (재무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사무위임조례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제·개정, 사무이관 등에 따라 변동 및 추가된 사무를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신규 위임사무 추가 [별표 2]
 -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2017.4.18.(제정), 2018.4.19.(시행)]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8.3.13.(제정), 2019.3.13.(시행)]
- 상위법 제명변경 등에 따른 근거법규 현행화 [별표 2]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696호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남동구 본청·보건소·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공무원”을 각각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람”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보건·

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사업으로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으로 한다.

제5조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을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으로 선택하는”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속공무원의 생일”을 “생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을 “명절”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소속공무원 자녀의”를 “자녀 중”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를 “공로연수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1호) 중 “밖에 공무원”을 “밖에”로 한다.

11.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2. 경조사에 대한 물품지원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직장어린이집)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남동구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제1항 중 “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남동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관국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주관과장”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을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종합건강검진비 및 장례서비스 지원 등 추가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주요내용

- 적용범위의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제3조)
- 후생복지사업의 확대(제7조)
- 직장어린이집 관련 근거 신설(제7조의2)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697호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

인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인천광역시 남동경찰서”를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 등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혼란을 방지하고,
- 그 밖에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 : (제2조제1항)
- 공공기관의 명칭을 정비함: (제5조제2항제4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698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탁자”라 함은”을 ““수탁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이용요금을”을 “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

호(중전의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강습을 말하고, “강습료”란 프로그램 참가시 납부하는 사용료를”을 “강습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강습료”란 사용자가 프로그램 참가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남동2국민체육센터

제4조 중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로 한다.

제5조 중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를 “경기대회”로, “범위 안에서 구민이”를 “범위에서 구민이 체육시설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 중 “밖의”를 “밖에”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2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제도적이고 안정적인 요금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2국민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정비함 : 제3조, 제9조
- 상위법에 맞게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 정비 : 제10조, 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정비 : 2조, 제4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699호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체육회”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체육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장애인체육회는 법인이나 단체로 설립한다.

제5조(대상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5. 장애인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9. 장애인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구 장애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장애인 체육 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 관련 규정
5. 회장 및 부회장 선출 규정
6.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총회 관련 규정
7. 임원 및 직원 관련 규정
8. 사업 수행 규정
9. 정관 변경 규정
10.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장애인체육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친다.

제8조(기금) 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 세부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정한다.

③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부금
3. 제6조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④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 제5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비용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① 장애인체육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와 이사를 두며, 임원은 비상근 직으로 체육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로 한다.

②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거나 추대한다.

제12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사무국) ① 장애인체육회는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고 사무국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위임 등)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운동경기부 및 장애인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장애인체육회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남동구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여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제3조)
- 장애인체육회 설립,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제4조~제6조)
-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재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10조)
- 장애인체육회 임원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4조)
- 장애인 체육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 (제1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700호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남동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장이 된다.

제7조(심의요구 등) ① 구청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대상 기부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심의요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사전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2.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행위 여부
3.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제7조제3항 관련)

안전번호		접수기관 (부서)	
기 부 자	주 소		
	성 명		
기부금품	• 금전: 금 원정 • 물품: 원 상당) (환산액: 금		
기부사유	•		
기부목적 및 용도	•		
심의요구 내 용	•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사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전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전 검 토 서 (제7조제3항 관련)

1. 지정기탁 개요

- 가. 접수기관(부서):
- 나. 기 부 자:
- 다. 기부금품:
- 라. 기부사유:
- 마. 사용목적과 용도:
- 바. 기타 참고사항:

2. 접수부서 확인사항

-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검토 결과

가. 접수부서

나. 주무부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부금품 접수 심의 결과 (제8조제3항 관련)

귀 기관(부서)에서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일 시 :

2. 방 법 : 회의심의, 서면심의

3. 장 소 :

※ 참석위원 : 총 ○○명 중 ○○명

4. 안 건 :

5. 결 과 : 심의의결서와 같음

년 월 일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구청장 책무 및 기부자 관리(제3조, 제4조)
-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5조~제8조)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701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저소득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과 노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자금구분 및 관리·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계정
2. 노인복지사업계정
3. 자활사업계정

② 각 계정의 자금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시비보조금
2. 구의 출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9. 기금의 운용수익금
10.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기금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사회복지전문가
3.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0조(사회복지사업) 제4조제1항제1호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4.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6.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1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거나 소재를 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서 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14조(노인복지사업) 제4조제1항제2호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인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로 한다.

제16조(자활사업)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활사업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를 따른다.

②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제17조(자활사업의 지원대상) 제16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1조(지원신청) 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이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은 세계현금의 예를 따른다.

제2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

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현행 성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수급자 가정 자녀 성적 장학금 운영사업을 수급자 자녀 생활비 지원 장학금 방식으로 추진하여 기금운영사업 목적 달성 및 사용실적율을 개선하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 대상범위 확대(제12조)
 - 기존 학업성적 장학생에서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서 우수한 장학생으로 개정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반복 조문 정비로 조문 통·폐합
 - 기존 6장 34개 조문에서 27개 조문으로 개정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702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65세”를 “65세”로 하고, “거주한자”를 “거주

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는”을 “사람에게는”으로, “아니하며,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만원으로 하며 6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중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을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을 “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자의 법정상속인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추석”을 “설, 추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망위로금의 지급 순위는 「민법」의 법정상속인 지급순위를 따른다.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		처리기간 30일
수 급 권 자	성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예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유의사항 :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등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불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 생략)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당 지급을 위한 기간 동안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 ☐	처리기간 10일
				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	

사망자	성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대상자와 관계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3. 사망자의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 초본(사망자)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 생략)	수수료 없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관 리 대 장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장

수당 종류	지급 일자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금 액	은행명	지급계좌

○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대장

지급 일자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금액	은행명	지급계좌

○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구분 (참전/ 보훈)	지급 일자	사망자 성 명	지 급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금액	은행명	지급계좌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내용을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하여 남동구 보훈 관련 조례 통합 정비
-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 폐지, 사망위로금 민원처리기한 단축, 사망위로금 지급범위 확대,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증진 도모

□ 주요내용

-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내용을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하여 보훈 관련 조례 통합
-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 폐지(제9조) : 보훈예우수당 신청으로 같음
- 사망위로금 처리기한 단축(제10조제1항) : 기존 30일 → 10일
- 사망위로금 지급범위 확대(제10조제5항)
 - 기존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민법에 따른 법적 상속인 범위로 확대
-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
- 띄어쓰기 및 문구 수정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703호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남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남동구노인복지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2번길 13(구월동)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교양·취미활동 사업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4.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한다. 다만 일부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목적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경로식당 이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

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운영능력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갱신에 따라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제1호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수탁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 의무)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지원)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대비하여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새로운 체제로 정비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구민 불편 및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의 삭제 (중전의 제15조)

□ 주요내용

- 목적 및 명칭·위치 (제1조, 제2조)
- 사업 및 기능 (제3조)
- 이용대상, 이용제한 및 이용료 (제4조 ~ 제6조)
- 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 제9조)
-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제10조, 제11조)
- 보험가입 의무 및 운영의 지원 (제12조, 제13조)
- 지도감독 (제14조)
-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704호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를 “남동구”로, “청소년시설이”를 “청소년시설의”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 활동·지원·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을 “법 제3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청소년시설”을 “시설”로, “조례에”를 “조례를”로 한다.

제4조 중 “청소년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소년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청소년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청소년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청소년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8조제1항 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시설”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 등에 청소년시설의”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직원의 채용(시설장 포함)”을 “직원(시설장 포함)의 채용”으로 한다.

제10조 중 “청소년시설별”을 “시설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수 등) 시설별 직원의 봉급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관련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를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관련 지침」을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는”을 “운영위원회는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청소년문화의집”을 “문화의집”으로 한다.

제16조제6호 중 “상담전화 1388운영”을 “상담전화”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청소년단체”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를 “남동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기 청소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담전화”를 “청소년 상담전화”로 한다.

제19조 중 “보호를 받고”을 “보호받고”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를 “상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원 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가족부로부터 통보된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남동구 청소년시설 직원 채용 자격기준 (제10조 관련)

○ 남동청소년문화의집(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관 장	1. 1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팀 장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팀 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 - 기계 및 전기관련 등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리 등 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의 의무배치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법 제10조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청소년육성 관련부서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 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읍·면·동 근무경력 및 관리자(부구청장, 구청장, 동장)는 경력인정 미포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담 인력 자격 기준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관련 지침에 따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기 준	비고
센터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팀 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팀 원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3급, 청소년지도사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종사자 자격 기준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관련 지침에 따름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기 준	비고
팀 장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팀 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비고

-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시설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를 위해 청소년 시설의 운영 방식 개선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의 운영방식에 맞게 개정(제7조, 제11조, 별표 2 직원 채용 자격기준)
- 중복 조항 등 삭제
(제5조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22조~제24조, 제27조)
- 법적 근거 조항 명시(제2조, 제8조, 제17조)
- 여성가족부 지침 기준에 맞게 정비(제21조제3항)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705호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

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남동구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명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남동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임면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되,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및 도서 등 대여
3.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공간 제공
4.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51조의2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보육 멘토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멘토링을 하기 위하여 보육 전문가로 보육 멘토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 멘토단의 구성·운영, 기능,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차량운영비 및 비품·장비 구입비
2.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3.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및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4.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심사 및 모니터링 활동 비용
5. 보육 멘토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어린이집 연합회 또는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

비용

7.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수탁자, 수탁기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기관
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등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 등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어린이집 또는 우수 보육교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정비: (제2조)
-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위탁, 수탁자의 의무 등 : (제3조~제7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구성 등 : (제8조~제10조)
-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 (제11조, 제12조)
- 보육 멘토단 구성·운영 : (제13조)
-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정산보고, 평가 : (제14조~제17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706호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

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3.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및 꿈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구성·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꿈터의 이용료 등) ① 꿈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방법,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꿈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 꿈터를 설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해당 꿈터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위탁·운영중인 꿈터 및 해당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별표]

이용료 징수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이용료(가정당)	내 역
시설이용	1,000원	·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기본시간 이후 30분 초과 시마다 500원 할증
프로그램 참여	2,000원	· 1회차 기준 · 개인별 재료비 별도

※ 비고 : 타 시·도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기준의 2배를 징수 함.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 및 운영(제3조, 제4조)
-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 가족품앗이 활성화 및 아이사랑꿈터의 이용료 등(제7조, 제8조)
-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위탁 및 지원 등(제9조, 제10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707호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위에 대한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

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반영을 위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목적(제1조)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제2조~제3조)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임기에 대한 사항(제4조)
-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708호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공사 시행자”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 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도로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제9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제1조~제3조)
-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보완요구 (제4조, 제5조)
-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및 대행자 지정 (제6조, 제7조)
-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
- 시정명령 등 위반자 조치 (제9조,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조례 제1709호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4조, 제5조, 제7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 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라 함은 학교를 오고갈 시에 이용되는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10. “절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11. “상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2. “주택건설공사”라 함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축물철거·멸실 및 착공신고 신청 전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 및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 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라. 중·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보장에 적합하도록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의 안전관리계획서 상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다만, 교통분야의 위원은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⑥ 간사는 해당 공사장 업무 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관계자는 주민협의체와 제1항 해당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 · 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주민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은 주민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공사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 · 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 · 중 · 고등

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남동구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제7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구청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 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제2조)
-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 자문위원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제5조)
-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제7조)

규 칙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일

남동구 규칙 제1036호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본 규칙은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조례가 폐지(2020.5.15.)됨에 따라 규칙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타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제정 2010.02.05. 규칙 제750호)